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①법 제2조제1호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통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 및 국어, 수학 등 교과에서 갖추어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제2항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법 제5조제1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연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교육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 학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속 학교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속 학교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

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육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초학력 보장 관련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교육전문직
4. 그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는 학생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 교과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

합계획을 토대로 교육감이 정한다.

- ②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 등에 관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및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선정은 매 학년도 개시 이후 60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 이후라도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할 수 있다.

- ③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해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수준, 학습부진 원인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④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⑤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와의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이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조인력 배치 등) ①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 자격, 역할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역할) ①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 실시를 위해 기초학력 보강 업무 경험이 있거나 해당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원 중에서 1명 이상의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 관리
2.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 및 상담
3. 학습지원대상학생 이력 관리
4.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0조(학습지원 담당교원 근무 조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수업 시수 등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연수)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 ②학습지원 담당교원은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①법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와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구분한다.
- ②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교육대학
- ③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의 시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연구 및 정책 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및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활용 지원
 3.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운영 지원
 4. 국가 수준의 학습지원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5.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성과 관리
- ④제1항에 따른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의 특정부서를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시·도교육청의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 학교의 학습지원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및 운영
 4.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성과 관리
 5. 제7조제6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등
- ⑤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을 겸임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
- ⑥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⑦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령을 위반했거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